

# 『베트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26년 2월 초안』

2026. 04. 01.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62,772,716
작성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베트남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법(LAW on E-Commerce, No.122/2025/QH15)』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정부 시행령 초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관리 기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전자상거래 시장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적용범위) 베트남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 및 개인
  -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 ②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 ③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
  - ④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투명화를 위한 단속·관리규정 마련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정부 등록 의무 도입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베트남 내 활동 요건 규정
  -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 정보 관리 및 거래 기록 관리 의무 부과
  - 거래 데이터 보관 및 정부 요청 시 정보 제출 의무 규정
  -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 도입
- (등록정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행정 등록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을 통한 등록 절차 진행
  - (등록절차) 시스템 계정 등록→플랫폼 운영 신고→서류 제출→심사 및 승인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추세 지속 강화
  - (미국) INFORM Consumers Act를 통해 고빈도 판매자의 신원 검증 및 정보 공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중심 규제 체계 운영
  - (EU) Digital Services Act(DSA)를 통한 플랫폼 책임 강화 중심의 규제 적용

- (일본) 특정상거래법 및 디지털플랫폼 투명성 법률을 통해 플랫폼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
- (중국) 전자상거래법 및 네트워크 감독관리방법을 통한 플랫폼 운영자 책임, 거래 정보 관리 및 정부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규제 운영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규정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제품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기술규제 영향은 제한적이나,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 구조에서 행정적·운영상 부담 증가 가능. 또한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 규제 성격 및 데이터 관리 규제 포함
- (권고사항) 관련 규제 추적관리 및 신규 소비자보호규준 충족
  -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플랫폼 운영 기업은 거래 정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필요
  - Cross-border 전자상거래 기업은 현지 책임자(베트남 국적소지자) 지정, 플랫폼 등록 요건, 데이터 관리 의무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플랫폼 등록 및 행정 절차 부담 증가) 베트남 정부 등록 및 현지 책임자 지정 등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 증가 가능
- (거래 데이터 관리 의무 강화)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기록 및 판매자 정보를 관리하고 정부 요청 시 제출 필요로 비용 증가 가능

####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규제 대응이 완료된 플랫폼 중심 판매 전략 수립
  - (중견기업) 거래 데이터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
  - (대기업) 현지 책임자 지정 및 직접 진출 전략 검토

## 목 차

요약문 .....	1
I. 규제 개요 .....	2
II. 규제 세부 내용 .....	4
III. 관련 등록 정보 .....	7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0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0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13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4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14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19
VI. 대응 방안 .....	20
참고 1 참고자료 .....	21
참고 2 규정(전문) 원문 번역본 .....	22

## 요 약 문

규 제 명	영문	Implementing the Law on E-Commerce, Draft Decree, February 2026		
	국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26년 2월 초안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제정 초안	
시행(예정)일	2026.07.01. (초안기준)	통보일(고시일)	2026.02.24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2026.03.06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천불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62,772,716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li> </ul>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정보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 의무, 해외 플랫폼의 베트남 내 운영 조건, 전자상거래 거래 정보 관리, 소비자 보호 의무 및 감독 체계 규정,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등록 의무와 현지 책임자 지정 등 요구</li> </ul>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와 운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에 등록하고 거래 정보 관리 및 감독 체계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ross-border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li> </ul>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 현지 책임자 지정 및 거래 데이터 관리 의무 강화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li> </ul>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등록 절차 및 거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현지 책임자 지정 등 규제 대응 체계 마련 필요</li> </ul>		

# 1

##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온라인 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 국회는 전자상거래법(Law on E-Commerce, No.122/2025/QH15)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기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베트남 내 활동 요건 등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관리 체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 규제 요지

-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 초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기준과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함
- 특히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베트남 정부 등록 의무, 플랫폼 운영 요건, 거래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여 Cross-border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함
-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 정보 관리, 거래 기록 관리, 소비자 보호 조치 등 전자상거래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함

### □ 적용대상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됨

-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
  -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 특히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베트남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시행일

- 본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시행령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 규정 일부가 대체 또는 개정될 예정임

## 2

## 규제 세부 내용

### □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	신규 제정 초안

### □ 세부내용

#### ○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 제도

- 본 시행령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정부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됨
  -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 계정 등록
  - 플랫폼 운영 정보 신고
  - 관련 서류 제출
  - 정부 심사 및 승인
- 정부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정보 관리 체계, 판매자 관리 체계 및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받게 됨

####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 본 시행령은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함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베트남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베트남어 인터페이스 제공

-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사용
-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 일정 규모 이상의 베트남 내 거래 발생
- 이러한 플랫폼은 베트남 정부에 플랫폼 운영 정보를 등록하고 전자상거래 관리 체계에 참여해야 함
- 해외 플랫폼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할 경우 베트남 국적을 가진 현지 법적 책임자 지정 등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자상거래 거래 정보 관리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정보 관리 의무를 부담함
  -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정보를 관리해야 함
    - 판매자 정보
    - 상품 정보
    - 거래 기록
    - 결제 정보
  -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록 절차
  -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 ①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신청서 제출

② 정부 기관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

- 정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관련 감독 체계

-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활동 관련 행정 절차 및 관리 업무는 산업무역부가 중심으로 수행함

### □ 등록 절차

- 본 규정은 제품 인증 또는 시험·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기술규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행정 등록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임
-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됨
  - ①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 접속 및 계정 등록
  - ② 플랫폼 운영 관련 정보 신고
  - ③ 관련 서류 제출
  - ④ 정부 심사 및 승인
-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만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 사후관리

-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를 부담함
  - 판매자 정보 관리
  - 거래 기록 관리
  -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 정부 요청 시 거래 정보 제공
-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및 계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정부의 감독 또는 조사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표시사항

- 본 규정은 전통적인 제품 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제품 라벨 표시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 대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정보를 플랫폼 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함
  - 판매자 정보
  -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 거래 조건 및 결제 조건
  - 소비자 보호 및 환불 정책
-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 신청 시 유의사항

- (등록 유효기간) 본 규정은 등록 유효기간 개념을 두지 않으며, 플랫폼 등록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등록비용) 정부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의 시험·등록 비용은 규정되지 않음
- (서류 보존기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소 1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 데이터 유형별로 최소 1년 또는 3년이상 보존기간 부여
- (변경사항 발생 시) 플랫폼 운영 정보, 기업 정보 또는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 처분 또는 플랫폼 운영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 적합성평가 기관

- 본 규정은 제품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기관을 지정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 및 관리 업무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담당함

## 4

#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 미국

- (현행 규정) 미국은 베트남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전등록제는 두고 있지 않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INFORM Consumers Act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빈도 제3자 판매자에 관한 은행계좌, 연락처, 세금정보 등을 수집·검증하고, 일부 판매자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의심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 (도입동향) 미국의 규제 방향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사전 인허가 보다는 판매자 신원 확인, 소비자 기만 방지, 사후 집행 강화에 초점이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FTC가 INFORM Consumers Act 이행을 안내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을 등록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소비자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위험 기반·판매자 기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베트남 초안처럼 해외 플랫폼의 현지 책임자 지정이나 예치금 납부까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님

### 2

#### EU

- (현행 규정) Digital Services Act(DSA)를 통해 온라인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 공통 의무를 부과함. 적용 대상으로는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여행·숙박 플랫폼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판매자 추적 가능성, 불법 콘텐츠 대응, 투명성 확보 등의 의무가 부과됨

- **(도입동향)** EU의 최근 방향은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로 보기보다 시장질서 유지 책임을 갖는 규제 대상으로 보는 데에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SA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과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위험관리 의무를 적용하는 구조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베트남과 같이 외국 플랫폼에 대한 별도 예치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폭넓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시 말해 시장 접근 전 허가보다는 플랫폼 책임과 투명성 의무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음

### 3

###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두 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 특정상거래법을 통한 통신판매 등 표시의무, 부당권유 규제, 반환조건 표시 등 소비자 보호 규율
  - 2)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통한 지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에게 거래 조건 공개, 투명성·공정성 확보 의무 부과 및 거래 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을 통한 온라인몰 등 소비자 이익 보호 조치와 판매자 정보 관련 제도 운영
- **(도입동향)** 베트남과 같이 광범위한 사전등록·허가 체계보다 플랫폼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 분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은 지정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소비자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서 판매자 특정과 분쟁 해결 촉진을 중시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플랫폼의 거래조건 공개, 소비자 불만 대응, 판매자 특정 가능성 확보를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 초안과 같이 해외 플랫폼 일반에 대해 현지 책임자 지정과 보증금까지 요구하는 구조는 아님

- (현행 규정) 전자상거래법과 네트워크거래 감독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내 사업자, 자가 웹사이트 운영자 등을 포괄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시장주체 등록과 납세의무 등을 규정
  - (네트워크거래 감독관리방법)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 전반과, 소셜커머스·라이브커머스까지 적용 범위 포함
- (도입동향) 최근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자 책임, 거래질서 유지, 라이브커머스 및 소셜미디어 기반 거래 관리, 반독점·공정경쟁 이슈가 함께 강화되는 추세임
  -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2025년 말)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중국은 베트남과 비교할 때 플랫폼 운영자 책임과 정부 감독권이 강한 편이며, 라이브커머스나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까지 폭넓게 플랫폼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다만, 이번 베트남 초안은 특히 외국 플랫폼의 베트남 내 등록·책임자 지정·예치금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다른 특징이 있음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미국 <sup>1)</sup>	EU <sup>2)</sup>	일본 <sup>3)</sup>	중국 <sup>4)</sup>	베트남
상위 법·프레임 (전반)	INFORM Consumers Act* 중심의 판매자 검증, FTC 집행	Digital Services Act(DSA)	특정상거래법, 디지털플랫폼 투명화법	전자상거래법, 네트워크 거래 감독관리방법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 초안
주요 규제부처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	소비자청(CAA), 경제산업성(METI)	공업정보화부(MIIT)	산업무역부(MOIT)
규제 기본 방향	판매자 신원 검증 및 소비자 보호	플랫폼 책임·투명성·불법상품 대응	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정부 감독 강화	플랫폼 사전관리·소비자 보호·거래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전 등록/신고	일반적 등록제 없음	플랫폼 유형별 의무 부과 및 위험기반 관리 체계	일반적 등록제 없음	플랫폼 유형에 따라 등록·감독 존재	플랫폼 유형별 신고(통보) 및 등록(승인) 제도 존재
해외 플랫폼 특별의무	제한적	EU 서비스 제공 시 DSA 의무 적용	외국 플랫폼 일반에 대한 별도 예치금 제도 없음	중국 시장에서 플랫폼 규제 적용	베트남 대상 해외 플랫폼에 등록·현지책임자 지정·운영요건 부과
판매자 신원 확인	고빈도 판매자 정보 수집·검증 의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Trader traceability	판매자 특정 및 분쟁 해결지원 중시	플랫폼 내 사업자 관리 및 등록 의무	판매자 식별정보·서류 확인 및 관리 의무
거래기록·정보 보관	의무 존재하나 베트남식 중앙등록 구조는 아님	투명성·정보제공 의무 중심	분쟁 대응·정보 제공 중심	거래정보·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	거래·판매자 정보 보관 및 정부 제출 의무 (시스템 구축 요구)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신고수단 제공 의무	불법상품·불법콘텐츠 대응 및 불만처리 체계	불만·분쟁 해결 촉진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온라인 불만접수처리절차기한 결과통지 및 환불정책 의무
라이브커머스·소셜커머스 반영	직접적 규율은 제한적	플랫폼 유형별 적용 가능	별도 전면 규율보다는 개별 법체계 적용	소셜·라이브 기반 거래까지 명시적 규율	라이브스트림·소셜형 거래 명시적 규율
현지 책임자 지정	일반적으로 없음	일반적 의무 아님	일반적 의무 아님	제도별로 상이	해외 플랫폼에 베트남 내 책임자 지정 의무
예치금/보증금 제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해외 일부 플랫폼(중개·소셜 등) 예치금 제도 존재
규제 강도 종합	중	비교적 높음	중	높음	비교적 높음

\* INFORM(Integrity, Notification, and Fairness in Online Retail Marketplaces) Consumers Act: 온라인 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 각 국가별 규제 내용은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규제 관련 대표 법령 및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 정리함

1) FTC (INFORM Consumers Act) - <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resources/INFORMAct>

2) EU Digital Services Act (DSA)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2065/oj>

3) METI, Digital Platform Transparency Act -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digitalplatform/transparency.html](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digitalplatform/transparency.html)

4) SAMR (E-commerc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Measures) - <https://www.samr.gov.cn>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https://npcobserver.com/legislation/ecommerce-law/>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 규제 개요

-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정부 시행령 초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기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베트남 내 활동 요건, 거래 정보 관리 의무,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플랫폼 등록 의무, 현지 책임자 지정, 거래 데이터 관리 및 정부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제품 자체에 대한 기술요건이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규제는 아니나, 플랫폼 기반 거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규제로서 간접적인 무역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 주요 요구사항

- **(플랫폼 등록)**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베트남 정부에 플랫폼 운영 정보를 등록해야 함
- **(해외 플랫폼 규제)**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은 베트남 내 책임자 지정 등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거래 정보 관리)**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기록, 판매자 정보 및 상품 정보를 관리하고 정부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데이터 보관)** 거래 관련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소비자 보호)** 플랫폼 내 판매자 정보 공개, 환불 정책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함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 시장 진입 영향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베트남 정부 등록 및 현지 책임자 지정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신규 시장 진입 시 플랫폼 등록 및 현지 책임자 지정 등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베트남 내 물리적 거점이 없는 기업의 경우 현지 법적 책임자 확보 및 운영 구조 재설계가 필요함

- 운영 비용 영향

-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데이터 관리 및 보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IT 시스템 구축, 보안 강화,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정부 감독 요청 시 거래 정보 제출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플랫폼 운영 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규제 준수 부담

-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 정보 검증, 거래 모니터링, 소비자 보호 정책 운영 등 준공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플랫폼 운영 기업의 내부 통제 및 법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함

- 수출 영향

-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기술규제는 아니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수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임.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구조에서는 플랫폼 이용 요건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 접근 비용 및 운영 방식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구조적 파급효과 분석

- 시장 구조 영향

-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 규모 플랫폼 및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방식은 자사몰 중심에서 현지 등록을 완료한 플랫폼 의존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Cross-border 전자상거래 규제 확대
  -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물리적 진출 없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내 기업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규제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데이터 규제 및 관리 리스크 증가
  - 거래 데이터 저장 및 제출 의무는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담을 증가시키며,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향후 데이터 관리 규제가 강화될 경우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라이브커머스 및 디지털 마케팅 영향
  - 라이브커머스 및 소셜커머스 기반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인플루언서 기반 마케팅 및 실시간 판매 전략에 변화가 요구될 수 있음
- 시장 진입 장벽 상승
  - 플랫폼 등록, 현지 책임자 지정, 데이터 관리 의무 등은 중소기업 및 신규 진입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일부 해외 플랫폼 및 판매자의 시장 철수 또는 진입 포기 가능성 존재
- 규제 수준별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규제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 기존 플랫폼 중심 수출 구조 유지가 가능하며, 일부 데이터 관리 및 행정 절차 대응 비용 증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구조를 유지하면서 규제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규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 해외 플랫폼은 등록, 현지 책임자 지정, 데이터 관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은 IT 시스템 구축, 법률 대응, 내부 통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규제 강화 및 감독 확대되는 경우
  - 데이터 제출 요구 및 플랫폼 책임이 강화될 경우, 일부 해외 플랫폼의 시장 철수 가능성이 존재함
  - 국내 기업은 플랫폼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특정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현지화 전략 또는 직접 진출 필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 데이터 관리, 현지 책임자 지정, 운영 요건 등이 강화될 경우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 또는 파트너십 구축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함

○ 기업 규모별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중소기업
  - (영향 특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로, 규제의 직접 적용 대상보다는 플랫폼 정책 변화에 따른 간접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비용 영향)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제출 요구, 거래 정보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대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시나리오)

- ◎ 기존 플랫폼 이용 구조 유지 시: 규제 영향은 제한적이나, 플랫폼 정책 변경에 따라 판매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 있음

- ◎ 규제 강화 시: 일부 플랫폼의 입점 요건 강화 또는 수수료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함

- (종합평가) 중소기업은 직접 규제 대응보다는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하며, 플랫폼 선택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견기업

- (영향 특성) 자체 브랜드 운영 및 복수 플랫폼 활용 구조로, 규제 대응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함

- (비용 영향)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법률 대응 비용 등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있음

- (시나리오)

- ◎ 규제 정상 적용 시: 데이터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비용이 증가함

- ◎ 규제 강화 시: 현지 책임자 지정, 법률 자문 확보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발생함

- (종합평가) 중견기업은 규제 대응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특정 플랫폼 중심 전략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대기업

- (영향 특성) 자체 플랫폼 운영 또는 글로벌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규제 대응 전략 선택이 가능함

- (비용 영향) 현지 법률 대응,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조직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있으나 대응 여력이 존재함

- (시나리오)

- ◎ 규제 정상 적용 시: 현지 책임자 지정 및 등록 절차 대응이 가능함

- ◎ 규제 강화 시: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직접 진출 전략 검토가 가능함
- (종합평가) 대기업은 규제 대응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확보가 가능함

○ 결론 및 권고사항

- 본 규정은 전통적인 기술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플랫폼 기반 무역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등록 의무, 데이터 관리 의무 및 현지 책임자 지정 요건은 Cross-border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관련 기업은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플랫폼 전략 선택,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현지 대응 전략 수립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규정은 제품의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규제에 해당하므로, WTO TBT 협정의 전형적 검토 항목이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TBT 협정 위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6

## 대응 방안

### □ 대응 방안

####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플랫폼 의존형 대응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운영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li> <li>- 규제 대응이 완료된 주요 플랫폼 중심으로 판매 채널 집중</li> <li>- 플랫폼 판매자 정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 따라 정보 제공 및 거래 관리 체계 대응</li> </ul>
중견 기업	내부 관리 및 거래 통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데이터 관리, 소비자 보호 정책, 판매자 정보 관리 체계 정비</li> <li>- 플랫폼 규제 변화에 따른 거래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의무 대응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구축</li> <li>- 복수 플랫폼 활용 전략 유지하되 규제 대응 비용을 고려한 채널 최적화</li> </ul>
대기업	시장 전략 재편 및 선제적 규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등록 제도, 현지 책임자 지정 등 규제 요건 선제 대응</li> <li>-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한 규제 준수 체계 구축</li> <li>- 필요 시 현지 진출 전략(법인 설립 등) 검토</li> </ul>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 베트남 전자상거래 기본 법률

- Law on E-Commerce (Vietnam), No.122/2025/QH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Luat-Thuong-mai-dien-tu-2025-so-122-2025-QH15-662035.aspx>

## ○ 베트남 기존 전자상거래 시행령

- Decree No. 52/2013/ND-CP on E-Commerce

<https://www.thaichamvn.org/wp-content/uploads/2023/06/decreed-no-52-2013-nd-cp-dated-may-16-2013-of-the-government-on-e-commerce.pdf>

## ○ 기존 시행령을 개정된 규정

- Decree No. 85/2021/ND-CP

<https://apolatlegal.com/wp-content/uploads/2025/04/Decree-85-2021-ND-CP.pdf>

## ○ WTO 협정

-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7-tbt.pdf](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7-tbt.pdf)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CHÍNH PHỦ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So:...../2026/ND-CP

하노이, ... 월 ... 일 ..... 2026년

디르 타오  
2026년 2월 24일

NGHỊ ĐỊNH  
일부 법률 조항의 세부 규정

법률 TC 제63/2025/QH15호, 법률 전기법 제122/2025/QH15호, '교

통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122/2025/QH15, '교통

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조항의 시행세칙을 공포하였다.

제1장

NHUNG QU \*\*!NH CHUNG

### 제1조.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제8조 제9항 제5호, 제11조 제4항  
D1eU 14; 4번 드릴 디에우 15; 5번 드릴 디에우 17; 5번 드릴 디에우 18; 3번 드릴 디에우 19;  
항 2 디유 20; 항 7 디유 27; 점 b 항 1 디유 30; 항 2 디유 32;  
제1조 33항; 제2조 34항; 제3조 35항 d호; 제3조 36항; 제3조 37항; 제4조 38항 전자상거래법.

###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메인 화면은 사용자가 휴대폰을 켜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화면 또는 메인 화면을 의미합니다.
2. TV chic은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기술 지원 서비스, 전자상거래 물류 지원 서비스, 결제 서비스, 전자상거래 결제 중개 서비스,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국가 상업의 날

매년 12월 첫 번째 토요일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제2조

국가 무역의 날에 관한 공개 내용 및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책임

Msc 1

공개 내용: 무역의 날 기념식

Dieu S. 상업용 전기 공급망에 관한 정보

L 상업적 거래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a) 기업의 명칭, 본사 주소, 법적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개인의 거주지 주소.
- b)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법인 설립결정일자 및 설립결정기관, 개인의 납세자번호.

2. 저장된 정보는 제1조에서 명시한 계좌 정보를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저장된 정보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정 부분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 다른 위치에 제1조에서 명시한 계좌 정보를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정보 수집 목적 및 범위
2. 정보 사용 범위;
3. 정보 보관 기간;
4.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5. 정보 보호 방법, 외부자의 데이터 접근;
6.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을 플랫폼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데이터 주체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신의 데이터 삭제, 정정 또는 처리 제한을 수락하는 방법.

8.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처리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9. 정보 유출, 데이터 손실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제7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다음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운영 조건 및 거래 조건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공개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 및 감독 조치를 시행하며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b)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보장; 운영 조건 및 거래 조건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c) 개인정보, 거래정보 수집; 접수, 민원 처리, 이의 제기 접수;

d) 법률 위반 행위 감시 및 방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및 자료 제공.

2.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

a) Diric đăng ký, duy trì, tạm ngưng, chấm dứt hoạt động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quyết định hàng hóa, dịch vụ, giá bán và chính sách khuyến mạ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thỏa thuận với chủ quyền nền tảng;

b) 기술적 수단 및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제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불만 및 이의 제기를 해결합니다.

c) 정확한 정보 제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 처리; 배송, 보증, 교환, 환불 등 관련 업무 수행; 허가받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금지;

d) 재정적 의무 이행;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및 권한 기관과 협력하여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을 위반 처리.

3.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a)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 상품, 서비스 및 판매자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b) 상품, 서비스, 결제 및 배송 방법 선택; 개인정보 보호; 규정된 절차에 따른 불만, 요청, 이의 제기 접수 및 처리;

c)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정확한 결제, 적시 배송;

d) 법률 규정, 플랫폼 운영 조건 및 거래 조건을 준수하며,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제8조. 불만 접수 및 처리, 요청, 이의 제기**

공개적으로 게시된 불만, 요청, 이의 제기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불만, 요청,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절차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접수, 수신'접수 ~~및~~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

3. 초기 심판 기간 및 사건 유형별 해결 기간

4.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해야 할 조치 및 도구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조치 및 도구

5.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와 절차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및 절차.

**제9조 정책에 관한 사항**

가격 정책 페이지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상품 가격에 관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1. 가격 정책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모든 비용(세금, 운송비 및 기타 발생 비용 포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트림 트루용 hpp 당사자들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가격 정보가 아직 저장소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와 같은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세금, 운송비 및 기타 발생 비용 포함)이 포함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서비스 요금 산정, 계정 유지, 주문 처리 및 기타 서비스 유형에 관한 정책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정책에는 서비스 요금 산정 방법( ) 및 적용 시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10조.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건 또는 제한 사항**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제한 사항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을 플랫폼 내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적용할 경우, 해당 조건 및 제한 사항을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 해당 조건 및 제한 사항(있는 경우)은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a) 공급 기간 제한: 시간대, 요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상품이 제공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b) 지리적 제한 : 특정 지역, 지역, 지방에서 상품, 서비스의 배송이 제한되거나 공급이 제

한되는 경우;

c) 고객 대상 제한: 연령 제한 조건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검사 및 테스트;

d) 거래 조건: 각 거래 또는 각 고객에 대한 최대, 최소 거래량;

d) 서비스의 유효성에 관한 조건: 상품, 서비스의 공급이 기술적 이유, 통보, 불가항력적 사건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제11조. 결제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제 정책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 수단과 함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1. 결제 수단 선택 시 수수료 부과 여부;

2. 현금화 서비스는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포인트 적립, 환급 또는 사용 시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포인트 적립 방식, 사용 방법, 적용 범위, 조건, 비율 및 한도, 당사자의 책임 등에 관한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포인트 적립은 플랫폼 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결제 서비스의 부수적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플랫폼 내 거래 이외의 결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제12조. 상품 전시 정책**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상품, 서비스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검색 키워드에 대한 과도한 노출;
- b) 유료 전시를 유도하는 행위
- c) 플랫폼 이용자의 접속 및 거래 기록
- d) 소비자의 평가 및 의견
- d) 따라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 e)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 g) 프로모션 정책, 할인 관련 사항;
- h) 지역, 국가, 관할 구역 *관련* 사항;
- i) 배송 및 결제 촉진;
- k) 기타 주요 기준.

2.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판매자가 하나, 일부 또는 전체 판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계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제13조. 상품 관련 라이브 스트리밍 운영 규정**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반드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 관한 규정을 공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1.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2. 조건, 절차, 계정 등록 절차, 판매자 계정 확인 및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
3.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사전 방송을 중단하고, 표시된 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링크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절차;
4. 절차 및 지침서: 상품 판매 라이브스트리밍 시 안전 위험이 있거나 구매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라이브스트리밍 판매 시 법적 규정에 따라 경고 내용을 표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5.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과정 중 및 이후 시청자의 불만, 요청,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 **제14조. 배송 정책**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과 관련된 배송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배송 방법;
2. 배송에 대한 책임 제한;
3. 배송에 관한 제한 사항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조건(해당하는 경우).
4. 물류 센터의 책임 *분담* 및 물류 센터의 물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검수 정책.

#### **제15조. 반품 및 환불 정책**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반품 및 환불 정책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반품 및 환불 대상 상품에 관한 조건.
2. Thời h      반품 요청 및 환불 절차.
3. 반품 및 환불 요청 접수 및 처리 절차.
4. 반품 및 환불 처리 방법.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각 당사자의 환불 비용.

**제16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1.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 촉진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의 사용 기간, HPP 유형의 전기 장비, 동시 사용이 허용되는 장비 수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b)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c) 사용 과정 중 제한 사항에 대한 공지(해당 시).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제공 장소에서의 서비스 이용 방법 공개;

b) 서비스 이용 기간, 변경/취소 조건 및 발생 비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

**제17조. 서비스 이용 및 환불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정책 페이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서비스 불만 처리 절차 및 서비스 불만 처리 후속 조치 방법;

2. HPP 동참 고객은 HPP 동참을 완료한 것이며, HPP 동참 고객은 HPP 동참을 완료한 측입니다. HPP 동참 고객이 HPP 동참을 완료한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통지를 보낸 시점이 HPP 동참 완료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요청을 접수한 후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시 환불 절차.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외국인 개인 판매자의 경우, 판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이름, 성별, 국적, 거주 지역, 개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 증명서 사본(발급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것), 개인의 결제 계좌;

- 외국 법인의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명, 본사 주소, 국가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기타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 기준);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여권 번호; 해외 기업의 결제 계좌;

d) 기업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 내용에 관한 등록 정보는 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된 내용에 따라 공개됩니다. 단체의 명칭, 소재지 주소; 개인의 성명, 거주지 주소. 해당 정보는 베트남어로 표기하거나 라틴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d)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내용을 검토하고, 판매자가 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상품 분류에 속하지 않으며, 영업 허가를 받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관련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는지 확인합니다.

e) 판매자의 정보 및 상품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은 등록 시점부터 최소 1년 동안 판매자의 계정 정보를 보관합니다; 국가 기관이 수사 권한을 행사하여 법률 위반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추출 기능을 보장합니다.

2. 중개업체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a) 이 조항의 책임 규정;

b)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이 공지, 공표, 광고, 소개, 계약, 약속 등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을 수령한 후 본 규정에 따라 반품 및 환불을 진행하며,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반품 및 환불을 처리합니다.

c) 공개적으로 상품 회수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판매자 또는 권한 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접수한 즉시 10일 동안 동일한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상품 반품을 접수하는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보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hạm, hàng hóa đó trên nền tảng thông qua số điện thoại người mua hoặc tài khoản của người mua trên nền tảng;

d) 관련 당사자들이 플랫폼에서 거래에 참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개된 불만, 요청,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된 채널을 통해 또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접수된 요청에 대해 조사,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8) 상품, 서비스에 관한 거래 내역, 등록된 계정 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 계정이 일시 정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판매자가 최소 3년 동안 체결된 계약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계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g)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판매자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h)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 계좌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기 최소 5일 전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i) 구매자가 판매자와 상품에 대해 평가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평가와 리뷰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법적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평가나 리뷰를 금지합니다.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k) 판매자의 계좌 거래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최소 3년간 보관하고, 해당 거래가 체결된 시점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법 위반 행위 또는 법 위반 행위의 징후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at;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는 최소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l) 손해 배상 책임 또는 관련 책임 부담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손해 배상 책임은 법적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민사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3. 중개업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a) 본 조항 제2항에 규정된 책임

b)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플랫폼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불만, 요청, 이의 제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

c)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 경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 재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공개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 조건을 위반한 행위, 즉 거래 조건을 위반한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위반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 제2조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 결과, 경고, 벌금 부과 등을 보고한다;

d)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 논리, 기능,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기술적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d)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물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명단을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및 당사자 간 협력 계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표시하고, 구매자가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불만 접수 및 해결 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명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추고,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불만, 요청, 이의 제기를 제출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b) 민원 접수 시, 요청, 불만, 이의 제기에 대해 시스템은 즉시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 요청, 불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후, 당국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해당 민원인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시행 예정인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 일정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불만, 요청,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경우, 당사는 24시간 이내에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c) 모든 결정은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간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계약 및 법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관리 시스템과 불만 처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플랫폼 운영자는 피해자에게 구제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제20조. 플랫폼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전기

1. 이 규정의 제18조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사회 활동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본 규정 제18조에 규정된 책임;
- b) 판매자가 상품 판매 및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 시 판매자 계정 정보를 선택,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
- c) 판매자 계정 식별 표시를 공개하고, 표시가 명확하고 식별 가능하며 다른 사용자 계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확인을 위한 공인된 공인 인증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
- b) 본 규정 제19조에 규정된/계정 책임;
- c) 판매자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최소 3년간 플랫폼에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 기관이 법 위반 행위 또는 법 위반 행위의 징후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계약서에는 최소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기능, 주문 접수 및 배송 기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a)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책임;

b) 본 규정의 제2조 제19항에 규정된 책임;

c) 온라인 상거래 콘텐츠와 주문 접수 기능을 분리하여 플랫폼 내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별도의 카테고리 구분합니다.

4.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a)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책임;

b) 본 규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책임.

#### **제2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1. 장례식장은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a) 본 규정 제18조에 규정된 책임;

b) 공개적으로 법 위반을 통보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 상거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간주됩니다. 등록;

c) *với* 의 사용자에게 대한 명확한 공지사항; 불만, 요청,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 사용자가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 사용자의 계정에서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

d) 기술적 기준, 보안 및 권한 부여, 접근, 통제,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조건을 수립하고, 데이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d) 상호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허가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 요청에 따라 cm 관청의 권한을 행사하여 hpp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법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g) 정보 및 거래 데이터를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검색 기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at homac 법률 위반 행위};

h)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2. 전자상거래 재고 관리 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a)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책임;

b)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명시할 때, 이용 약관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c)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부에서 다른 플랫폼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1. HPP는 권한 부여, 접근, 통제,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를 통보하여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인프라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전자상거래 물류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전자상거래 지원 기관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d) 결제 서비스,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결제 중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위반 징후가 있거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기관의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3. 베트남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제30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률을 위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 제23조. 사전 신고

1.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년도 전자상거래 활동 결과를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양식 10, 11, 12, 13호 양식에 따라 전기 사업 운영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단, 본 조항 제2항에 규정된 모델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매월 10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월의 전자상거래 활동 결과를 이 규정 부칙 제14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따라 활동 모델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3. 중개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대규모 유통망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거래 결과를 보고할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는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규정 부칙 제15호 양식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3조

#### QUẢN LÝ VÀ VLAN HÀNH NEN TĂNG THỰC HIỆN MẠI ĐIỆN TỬ

#### Mục 1

#### QUẢN LÝ VÀ VLAN HÀNH NEN TĂ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KINH DOANH TR C TIẾP**

**표 24. 통지, 수정, 보충, 확인 통지서 사업용 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에 관한 통지서**

1. 호세 통보서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문 접수 기능이 포함됩니다:

a)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 01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신청서

b)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인증 기관, 검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상품 거래 시 해당 산업 분류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법적 규정에 따른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Srta doi, bó sung thông báo nen tàng thirong mai dien tio kinh doanh tryc tiep có chúc năng d}at hàng tryc tuyen trong các trường hpp thay doi nhíing thông tin sau: 상호 변경;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책임자 변경; 플랫폼 주소 변경( ) 및 연락처 정보 변경; 플랫폼 운영 조건 및 거래 관련 공개 내용 변경.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온라인 주문 처리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a) 통보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사업용 전기 계량기 설치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양식 01호(부록)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b) 관련 서류, 회의록, 내용 변경 사항, 보충 자료(있는 경우);

3.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직접 거래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a) 통지서 발송 안내: 내일 영업 시간 변경에 관한 공지 1호, 푸록 소재;

b) 관련 서류, 사업 중단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제25조. 사업장 이전 신고 절차**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통보 절차는 온라인 주문 접수 기능을 포함한다.**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고 및 수령 절차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 (www.online.gov.vn)을 통해 국가 공인 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상인은 상업 활동 관리 시스템에 따라 주소 및 계좌 정보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en te' dê cap nhat trang tha` i ho so va sua đ i, 보충 정보에 따라 요사항을 충족합니다.

3.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절차 c tiep은 다음의 2단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1단계. 국가 공공 서비스 계정을 생성한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Biróc 2. 3일 이내에 다음 내용 중 하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통지서 내용의 정확성 및 합법성 확인; 공개된 정보는 전자상거래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통지서 확인을 완료한 전자상거래 거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업체는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단계 1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고 및 정보 보완 절차는 다음 2단계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행됩니다:

1단계.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 사항 신고를 수행하고, 양식에 따라 정보를 보충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단계 2.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귀하는 다음 내용 중 하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공지된 확인 공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목록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CPU는 정보 수정 요청을 명확히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요청자는 수정 요청을 재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 60일 이내에 정보 수정 요청을 명확히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보충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는 사용이 중단되고 제3조 절차에 따라 재신고해야 합니다. 정보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된 후 전자상거래 활동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임신 보고 시 체인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절차에 따라 재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된 전자상거래 목록에서 *추출됩니다*.

5. 통보된 정보는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서 제2조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단계 2. 3일 근무 기간 동안, 관리자는 체인 작업 확인 정보 통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에서 통보 확인을 완료한 후 전자상거래 목록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2항

전자상거래 중개 및 운영 기준  
중개자, 전자상거래 **활동의 사회적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제26조.** 중간 유통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간 유통망의 사회적 활동, 중간 유통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1. 저장소 관리 시스템은 중앙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저장소 운영 시스템은 저장소 운영을 담당합니다. 저장소 운영 시스템은 저장소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저장소 운영 관련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며, 저장소 운영 시스템은 저장소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저장소 운영 관련 모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ac 3항 이 조항은 모델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저장소 운영을 규정하며, Bo Công Throng의 등록 확인 후 적용됩니다.

2. 중개 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 조건은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추지 않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온라인 주문 기능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의 관리 책임자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b)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c) 판매자가 생성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기 전에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d)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접수된 불만, 요청, 이의 제기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d)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법령에 따른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기준 03급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및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연동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e)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저장 용량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소 1년 이상의 데이터 보존 기간을 보장하는 기술적 보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g) 기술적 연결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과 연결하여 관련 책임을 이행하거나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h)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운영 규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온라인 주문 접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 온라인 주문 접수 및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기능:

a) 본 조항 제2항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상품의 표시, 유통, 판매,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술적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표시, 유통,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c)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최소 3년간의 거래 내역과 최소 1년간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 관련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는 전송 시점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d) 재판매를 위한 상품 수령 및 처리 방안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플랫폼에 게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에 게시된 공지, 공표, 게시, 광고, 설명, 계약,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d) 플랫폼에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 거래소 운영자는 거래소 내 거래에서 판매자의 자금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거래소 운영자와 판매자는 자금 보관, 인출 및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거래는 허가를 받은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제27조: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전자상거래 활동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저장소

1. 호소형 간접거래 플랫폼은 간접거래 플랫폼의 사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a) 중개상 거래 정보 등록 신청서, 중개상 거래 활동 신고서, 중개상 거래 기록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록 3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허가증, 인증서, 인감, 확인서, 관할 기관의 허가서 또는 기타 관련 서류의 사본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가 법령에 따른 조건부 영업업종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c) 본 조항 제8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 계획서.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d)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 관한 규정;

d)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 규정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이 활발한 경우);

e)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간의 계약서 양식.

2.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이 규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28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중개업체의 전기 공급 사업자 등록을 보완해야 한다.

중개자,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전기 사업자, 전기사업자 등록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해당 지역 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권한에 따라 시행한다.

2. 계획 수립, 지침 제공 및 지역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가  
적 행사인 'Thumig mai dien II'의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제54조. 정치, 사회, 직업 단체의 책임**

1.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산업협회,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은 회원사 및 관련 기관들이 매년 개최  
되는 국가 전자상거래의 날 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2. 각 부처, 언론 및 관련 기관은 국가 전자상거래의 날에 대한 홍보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전자상거래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소개하고 표창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가 전자상거래의 날을 해외에 홍보한다.

### **제8조 시행 조항**

#### **제55조. 시행 규칙**

1. 이 공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13년 5월 16일자 정부령 제52/2013/ND-CP호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 및 2021년 9월 25일  
자 정부령 제85/2021/ND-CP호 개정 규정, 2013년 5월 16일자 정부령 제52/2013/ND-CP호 전자상거래  
에 관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며, 본 정부령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활동의  
촉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 1월 15일자 정부령 제09/2018/ND-  
CP 2018년 1월 15일자 정부령에서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과 상품 구매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  
동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및 대외무역관리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